

채권압류명령신청

채 권 자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제3채무자 ◆◆◆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청구채권의 표시

- 1. 금 10,000,000원
 -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20○○가소○○○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액
- 2. 금 3,250,000원
 - 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한 19〇〇. 〇. 〇.부터 20〇〇. 〇. 〇.까지 연 〇〇%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
- 3. 합계 금 13,250,000원(1+2)

압류할 채권의 표시

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.

신 청 취 지

- 1.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.
- 2.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20○○가소○○○ 대여금청 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,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

1. 송달증명원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채권자 〇〇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

압류할 채권의 표시

금 13,250,000원

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○○. ○. ○.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다세대주택인 ○○빌라 401호를 임차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[다만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]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. 끝.

(of	₩ 대한법률구조공단
r.kr//4	

	1				
제출법원	※ 아래 참조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23조, 제2왕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(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)				
불복절차 및 기간	·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) ·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)				
비 용	・인지액 : 2,000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・송달료 : 당사자수×3,700원(우편료)×2회분				
기타	·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한보생한 채권에 대하여 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그로 인한 추가공사금 그로 인한 추가공사금 그로 인한 추가공사금 고 2001다62640 판결). ·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고 한 있음(대법원 2 ·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근 경우에는 집행의 도 때에는 이 마 면의(집행 처분) 이 대무명의(집행 처분) 등이 해제되지 알 서우가 등의 해제되지 알 사위는 집행채권자의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알 하는 것이고, 집행채권 이 압류 등의 없기 때 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전히 집행자의 입행 하는 것이 이를지 아니 건차를 해하는 것이 건차를 하는 건의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	은 압류목적채권이는 다른	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비며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미치지 아니하고, 따라서 공사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 아니함(대법원 2001. 12. 24. 선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였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 20마5252 결정).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기각하여야 하며, 만일 집행장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취소하여야 함. 집행채권자의 채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,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별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 경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 역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하루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 분으로서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 분으로서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 병해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 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		

- ※ 제출법원{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(민사집행법 제21조)}
 - 1. 채무자의 보통재판적(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)이 있는 곳의 지
 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)
 - 2.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), 다만,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)
 - 3.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)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